「구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수정안

의 안	
번 호	

1. 수정이유

O 노후 아파트에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실정을 반영하여 지원 대상에 대한 단서 조항을 추가하고자 함.

2. 수정 주요내용

- 안 제24조제3항제1호의 단서조항 중 '30년 이상 경과된 공동 주택은 지원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 경우 지원할 수 있다.'는 내용을 추가함.
 - 당 초: 다만, 5년 이내에 지원받은 금액의 합계가 1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지원 할 수 있다.
 - 변 경: 다만, 3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은 지원받은 날로 부터 3년이 경과된 경우 또는 5년 이내에 지원받은 금액의 합계가 1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.

「구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수정안

구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조제3항제1호 단서 중 "다만, 5년 이내에 지원받은 금액의 합계가 1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지원 할 수 있다."를 "다만, 3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은 지원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 경우 또는 5년 이내에 지원받은 금액의 합계가 1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."로 한다.

수정안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제24조(지원범위 및	제24조(지원범위 및	(개정안과 같음)
대상) ① (생 략)	대상) ① (현행과	
	같음)	
② 제1항에 따른 지	②	(개정안과 같음)
원대상은 사용검사		
일(주택단지안의 공		
동주택 전부에 대하		
여 임시사용승인을		
받은 경우에는 임시		
사용승인일을 말한	<u>10년</u>	
다)부터 <u>20년</u> 이 경		
과된 단지에서 실시		
하는 다음 각 호에		
해당하는 공사 등을		
말한다.		
1. ~ 12. (생 략)	1. ~ 12. (현행과 같음)	(개정안과 같음)
<신 설>	13. 전기차 화재 예 방과 대응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	(개정안과 같음)
<u><신 설></u>	14. 음식물 쓰레기 및 재활용 시설 설	(개정안과 같음)

<u><신 설></u>	<u>치 및 보수</u> 15. 옥외주차장의 <u>증설</u>	(개정안과 같음)
<신 설>	<u>16. 단지 내 옥외하</u> <u>수도 증설</u>	(개정안과 같음)
<u><신 설></u>	17. 자전거 보관 및 관련 시설 설치	(개정안과 같음)
<u>13</u> . (생 략)	<u>18</u> . (현행 제13호와 같음)	(개정안과 같음)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	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연도 보조금의 지원을 제외할 수 있다. <개정 2020.12.30.>
		7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